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득월액 조정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실시간 소득과약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시행('23.11월)에 따른 정산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기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세청 소득과약자료(간이지급명세서) 활용(안 제41조의2)

○ 조정신청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

나.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이자 등 지역보험료 환급금 이자 기

산일 등 규정 신설(안 제52조제2항)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산제도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이자의 기산일을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날로 명확화(안 제52조제2항제4호)

○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의 기산일로 신설(안 제52조제2항제5호)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임 근거 마련
(안 제64조)

○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근거 명시(안 제64조제1항)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제2항)

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수 확대(안 제73조)

○ 요양기관 종류를 감안하여 전체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3명에서 5명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으로 공단이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4. 공단이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5.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제64조의 제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본문 중 “위원의”를 “위원장 및 위원의”로, “한다”를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월액의 조정 시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8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62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 및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생략) <u><신설></u>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u>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으로 공단이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정산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u>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생략)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공단이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u><신설></u>	5.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6. ----- 제5호----- ----- -----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u>위원의 임기</u>) 분쟁조정위원회 <u>위원의</u>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u>위원의</u>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u>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u>) ① ----- <u>위원</u> 장 및 <u>위원의</u> -----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 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9명</u> 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등) ① ----- ----- <u>11명</u> 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 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u>3명</u>	4. ----- ----- ----- <u>5명</u>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8